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변 종 오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상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안 제1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내용 보완  
(안 제2조)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3조, 제4조,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명시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권자를 명확화하기 위해 “도지사”를 명시하는 등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규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함.
- 안 제2조제2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권자를 명확화하기 위해 “도지사”를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을 정하는 조항으로 지정권자를 간략히 규정함.
- 안 제3조는 대행자 선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정권자인 “도지사”를 명시함.
- 안 제6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관련 부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입법예고(‘22.10. 4.~‘22.10.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